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6 /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2. 01. 10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가.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 수집·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고 있으나, 2009년 7월 이후 유류비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집·운반 수수료를 현실화(인상)하고,
- 나. 농촌과 영세민이 많이 사용하는 재래식화장실의 분뇨수거요금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요금과 동일한 요금체계로 전환하며,
- 다. 분뇨 수집·운반 대행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분뇨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인상(조례 제7조 별표 1)
 - 수수료 인상을 : 8.4%
 - 기본요금(0.75m^3 까지) 10,810원 → 11,720원
 - 초과요금(매 0.1m^3 마다) 1,050원 → 1,140원
- 나. 재래식화장실 분뇨 수거요금을 정화조 청소요금과 동일한 요금 체계로 전환(조례 제7조 별표 1)
- 다. 분뇨 수집·운반 대행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 참조
 - (2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4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1. 11. 16 ~ 2011. 12. 6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

(제7조제1항 관련)

구분	수수료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기본요금 (0.75m ³ 까지)	10,970원	750원	11,720원
초과요금 (매0.1m ³ 마다)	1,040원	100원	1,140원

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 수수료를 말함

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수수료를 말함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조 (분뇨수집·운반의 대행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<신 설></p> <p>【별표 1】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(제7조제1항 관련)</p> <p>1. 수거식 화장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15%;">부과기준</th> <th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집운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 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ℓ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6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15%;">부과기준</th> <th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집운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 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요금 (0.75m³까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6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81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과요금 (마이 0.1m³마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5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5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 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</p> <p>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</p>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운반	처 리	계	18ℓ당	178	18	196원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운반	처 리	계	기본요금 (0.75m ³ 까지)	10,060	750	10,810원	초과요금 (마이 0.1m ³ 마다)	950	100	1,050원	<p>제5조 (분뇨수집·운반의 대행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.</u></p> <p>【별표 1】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(제7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15%;">부과기준</th> <th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집운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 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요금 (0.75m³까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97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,72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과요금 (마이 0.1m³마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4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14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 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</p> <p>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</p>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운반	처 리	계	기본요금 (0.75m ³ 까지)	10,970원	750원	11,720원	초과요금 (마이 0.1m ³ 마다)	1,040원	100원	1,140원
부과기준	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운반	처 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8ℓ당	178	18	196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기준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운반	처 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0.75m ³ 까지)	10,060	750	10,81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마이 0.1m ³ 마다)	950	100	1,05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기준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운반	처 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0.75m ³ 까지)	10,970원	750원	11,72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마이 0.1m ³ 마다)	1,040원	100원	1,14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참고 1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□ 하수도법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**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>

②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>

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>

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야하는 아니 된다.